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유아교육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유아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6의 제1항 및 제6항에서 유아 건강검진 생략 및 결과 기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(유아교육법 법률 제18193호, 2021.6.8. 공포, 2021.9.9. 시행)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거나 원장이 학부모의 동의하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확인한 경우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한 부분 삭제(안 제2조의6 제1항 단서 및 각 호 삭제)
- 나.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함을 규정한 부분 삭제(안 제2조의6 제6항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규제심사 해당없음

교육부령 제 호

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17조제3항”을 “법 제17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6(건강검진) ① <u>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. 다만,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.</u>	제2조의6(건강검진) ① <u>법 제17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단서 삭제</u>
1. 원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확인한 경우(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)	<u><삭 제></u>
2. 보호자가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원장에게 제출한 경우	<u><삭 제></u>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.	<u><삭 제>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유아교육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443